
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전해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1054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3. 31.

발의자 : 전해철 · 김승남 · 이용선

노웅래 · 김민철 · 김수홍

맹성규 · 조오섭 · 임종성

어기구 · 우원식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등으로서 자연생태 · 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 ·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 ·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 또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 ·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국립공원공단은 2015년부터 매년 운문산 생태 · 경관보전지역에 관하여 지방 환경청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에도, 환경부의 위임을 받은 환경청의 사무 중 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환경청이 매년 위탁공고 및 부수 절차를 거쳐 업무를 위탁하고 있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,

시·도지사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생태·경관보전지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(안 제61조제3항 신설).
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, 시·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1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② (생략)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61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② (현행과 같음) <p><u>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 받은 소속 기관의 장, 시·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